

국민권익위, 공직자 92.9% “청탁금지법 지지” 법 시행 초기보다 증가

- 청탁금지법 시행 5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2021. 9. 29.,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등의 92.9%, 일반국민의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이 시행된 2016년에 비해 각각 7.4%, 2.2%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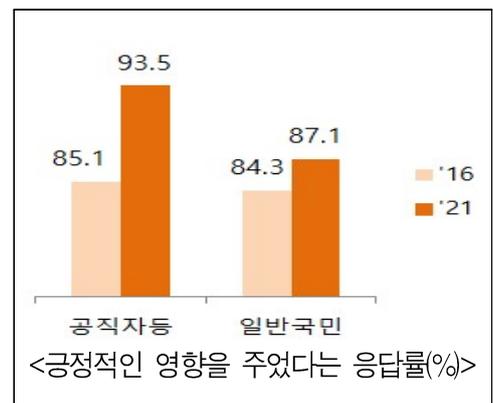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법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직자등과 일반국민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 개 요

- ▶ 목적 :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자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과 인식의 변화 조사
- ▶ 대상 : 총 2,003명[일반국민 800명,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초중고 및 대학 교원 303명, 언론사 임직원 150명, 영향업종 200명]
- ▶ 기간 : '21.7.22.~8.9.,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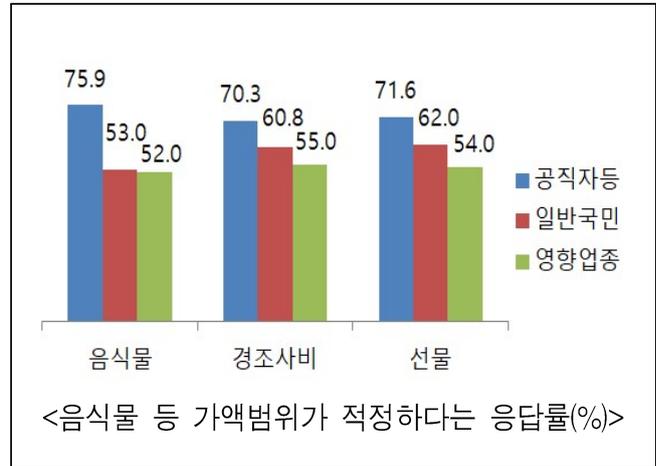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직자등의 92.9%, 일반국민의 87.5%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등의 경우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7.4% 포인트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등의 93.5%, 일반국민의 87.1%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했는데, 공직자등의 경우 2016년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은 공직자들의 85.7%, 일반국민의 81.3%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들은 2016년에 비해 16.7% 포인트나 증가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과반 이상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선물의 경우 공직자들 71.6%, 일반국민 62.0%, 영향업종 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 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 등의 지지가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들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패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해 이 법이 공직자의 청렴윤리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10.~10.20.) -

(2021. 9. 10., 국민권익위)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 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2	가족 채용 제한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직무관련자외의 거래 신고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안에서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해 공직자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례 >

- 부동산 개발 업무를 주로 하는 OO공사에 근무하는 A차장은 기관에서 사업 시행자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 지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였다.
- OO도청에 근무하는 B주무관은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시재생사업' 지구에 생계를 같이 하는 모(母)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였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에 더해 ①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③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던 자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했다.

또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된 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다.

< 이해충돌방지법령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적용례 >

- 지난 해 공공기관의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O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심의·의결했던 C변호사가 올해 고용된 로펌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심의하는 O기업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변호를 맡은 경우,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대리인인 C변호사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 공직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D신청인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으로 현재도 친분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 회피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그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이 법의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위반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령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령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 : 10개 행위기준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음

< 신고·제출 의무 : 5가지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제5조, 제7조)

-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제한·금지 행위 : 5가지 >

⑥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주요 성과 발표

- 법 시행 10년간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개에서 471개로 대폭 확대
 - 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해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

(2021. 9. 3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자 2011년 9월 30일에 처음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10년간 총 7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해 왔다. 우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법률을 제정 당시 180개에서 471개까지 대폭 확대했다.

* 대상법률: ('11)180개 → ('16)279개 → ('18)284개 → ('20)467개 → ('21)471개

또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위 반 행 위	제 정 당 시	개 정 후('18.5.)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처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이행강제금 : 이행 시까지 연 2회, 회당 3,000만 원까지 반복 부과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인 데 힘입어 신고자 보호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 원상회복 요구,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요구·고발조치,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요구 등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왔다.

제도 초반 5년간('11~'15) 보호 인용사건이 20건에 불과했는데 이후 5년간('16~'20) 6배 증가한 123건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을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471개 법률로 확대해 왔지만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그 밖에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색출하도록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로 19만 6,400여 명의 국민권익 구제

각급기관 권고 수용률 94.7%로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 달성
산업부·기재부 등 총 21개 중앙부처 국민권익위 권고 100% 수용

(2021. 9. 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1,924건으로 이 중 1,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각급기관에서 불수용 돼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한 후 불수용 민원 등이 있는 111개 기관의 248건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각급기관이 권고의 타당성을 인정해 88건을 추가로 수용함에 따라 전체 285개 기관 중 197개 기관(69.1%)이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민권익위 권고를 100% 수용한 기관은 산업부·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수용했지만 총 38개 기관은 여전히 불수용 민원(57건)이 있다. 불수용 사유는 크게 법령·규정상 곤란(25건, 43.9%),

과급력·형평성·예산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38.6%),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17.5%)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수용협력회의 등 적극 소통하여 국민권익 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 협력과 적극 행정을 통해 많은 민생고충을 해결해 왔다.

사례로 버스운전사인 A씨는 “구분하기 힘든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해 억울하게 5차례나 단속됐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해당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할 것을 경찰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경찰청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와 동일한 사유로 단속된 19,830건도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범칙금 환급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청 등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사안을 재심사해 불수용 24건 중 12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부과되어 취소 또는 환급된 세금이 약 7억 6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중앙부처도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권고 불수용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급기관의 권고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두 차례 국무회의 보고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처리 중요성에 대한 각급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공통된 인식하에 국민권익위와 여러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협조를 통해 국민권익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용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내용 반영 -

(2021. 9. 14., 국민권익위)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국민 2,478명 중 53%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이 과하다고 답변('20.11.2~11.13, 부동산 업종 종사자 1,233명, 일반국민 1,245명 참여)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 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과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자치단체 제도개선 이행계획 제출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